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7. 5 선고 2016나10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7. 5 선고 2016나1072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112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리 새마을회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AJ

나. AK

다. AL

라. AM

3. C

변론종결 2017. 6. 7.

판결 선고 2017. 7. 5.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1120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1.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AJ, AK, AL, AM은 제주지방법원 1946. 12. 20. 접수 제2401호로 마친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법원 2008. 3. 25. 접수 제21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24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1934.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J, AK, AL, AM은 1954. 9.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24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항소취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6. 9. 26.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6. 11. 15. 원고의 현재 소송대리인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R임)이 제출된 사실, 원고의 대표자가 2017. 1. 1. R에서 AO로 변경된 사실, 2017. 1. 11.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원고의 사무장 AN이 제출한 위 항소취하서에는 원고 및 대표자 AO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고, AO의 임명장, 인감증명서(AO 본인 발급), 신분증 사본 및 AN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여기에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의 안건으로 '이 사건 항소에 대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변호사보수 등 항소심 소송비용, 승소 전망 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진 후 무기명투표 끝에 위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6. 12. 26. 열린 원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로 의결된 점,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7. 1.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취하의 건'이라는 원고의 내부분서가 기안되어 대표자인 AO이 결재하였는바, 위 문건에는 실제 제출·접수된 항소취하서, 임명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의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고, 원고의 대표자가 직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취하서의 제출로써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취하서 위조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AN이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취하의 효력이 없고, 항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원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항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의결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운영위원회에서도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이 사건 항소취하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 이 사건 항소의 유지 결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고, 비용도 원고가 지출하는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원고 명의로 제기된 항소는 유지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 이 사건 소송에 이해관계가 큰 일부 주민들(이하 '토지주들'이라 한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제2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토지주들의 비용부담 조건으로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항소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후 토지주들이 나서서 항소하자는 안건이 제안되어 토지주들의 대표인 AP 간사가 '토지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한 점, 그러자 항소를 유지하자는 안건이 이미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하면 안된다는 등 반대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고, 이에 AQ 의원이 '원고에서는 가부가 끝났고, 손을 떠났다. 원고쪽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이 데모를 하든, 돈을 부담하든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자 의장이 AQ 의원의 의견처럼 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한 점, 토지주들의 제안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나 거수 투표 등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총의가 원고 명의로 제기된 항소를 토지주들의 비용 부담 조건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1.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권

판사이장육

판사정희엽